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동 분석과 활성화 방안 고찰*

A Study on Activation Scheme of Library Advisory Committee in Korea

이 용 남(Yong-Nam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 5 문화관광부 소관 시대의 활동 |
| 2.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 분석 | 3. 6 종합 분석 및 문제점 |
| 2. 1 위원회의 유형과 성격 | 4.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
| 2. 2 위원회의 운영 행태 | 4. 1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 |
| 3.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분석 | 분석의 시사점 |
| 3. 1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역할 | 4. 2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 |
| 3. 2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창설 | 성화 방안 |
| 3. 3 문교부 소관 시대의 활동 | 5. 결론 및 요약 |
| 3. 4 문화부·문체부 소관시대의 활동 | |

초 록

이 연구는 1989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의 변천과정과 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한 한 후, 우리 행정조직 상의 여러 위원회의 운영 행태와 미국·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 분석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참고하여, 이 위원회가 명실상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S

The study is to analyze the transition process and various activities of library advisory committees in Korea. In addition, the study compared activities of Korean library advisory committees to them of other countries such as USA and UK. It is found that the library advisory committees in Korea has not filled its mission and function since established in 1989. The study suggests several activation plans and scheme for the new library advisory committee.

키워드: 도서관정책위원회,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Library Advisory Committee.

* 이 연구는 2003학년도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특별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lyn0802@hans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3년 11월 22일

게재확정일자 2003년 12월 10일

1. 서론

도서관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처에 대해 도서관 관련정책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제언하는 도서관정책위원회 기구에 대한 관심이 요즘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배경으로서는 첫째, 도서관정책위원회가 발족 12년 만에 지난 2000년 폐지되는 비운을 맞아 망연자실하던 차에,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거 지난해 말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란 이름으로 다시 부활된 바 있는데, 취약한 기반이기는 하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도서관계의 심정 때문일 것이다. 둘째로는, 앞으로 문화관광부는 큰 틀의 도서관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행정의 집행기능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한다는 취지에 따라, 도서관박물관과 부서의 명칭을 없애고 그 보완책으로 도서관정책 수립 및 업무조정을 위해 '도서관발전위원회(가칭)'의 설치를 2004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예안에 반영하겠다는 당국의 구상(문화관광부 2003b, 11)이 수개월 전에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비롯되었다.

도서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러 관련 정부부처와 이를 조정하며, 정책 집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기관에 자문·건의·제언하는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중요성과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새로운 도서관정책위원회 기구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기구의 효율적인 조직과 운영 방안을 미리 마련하여 당국에 제시하는 일은 매우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필자의 전 단계 연구인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의 후속 연구로 진행하되, 우리나라 정부산하 위원회들의 개략적인 운영 행태와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분석한 후 외국 사례의 시사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 분석

2.1 위원회의 유형과 성격

위원회는 일찍이 영국과 미국에서 주로 활용되어 오던 제도로서 20세기에 이르러 각국에서 복잡한 사회·경제적 문제의 조정·해결을 위하여 이를 도입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해방 후 미군정시 행정민주화를 위한 시도로서 채택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각 행정기관이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민 및 각계 전문가의 충지를 체계적으로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함으로써, 계층제 조직이 갖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조직의 운영과 정책결정에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2인 이상의 복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정의를 내린 바 있다(총무처 1992, 23).

현대 정부의 적극적 기능을 집단적 판단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행정조직의 하나인 위원회 제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기준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최창호(1999, 479)는 권한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①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구속

력 없는 의사를 결정하며, 그 의사는 조연의 성격을 가질 뿐, 채택 여부는 다른 주체가 행한다.

- ② 의결위원회(legislative committee): 구속력 있는 의사를 결정하며, 그 의사를 집행하는 것은 역시 다른 주체에 의존한다.
- ③ 행정위원회(administrative board): 의사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위원회의 유형과 기능을 법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없으나, 정부자료(총무처 1992, 25-26; 1994, 3-4)를 종합하여 보면 위원회를 크게 행정관청인 위원회와 행정관청이 아닌 위원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행정관청인 위원회(행정위원회)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설의 위원회로서, 행정수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에 있고 그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의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 행정관청이 아닌 위원회

- ① 자문위원회: 구속력 없는 의사결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적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다.
- ② 심의·조정위원회: 정책의 최종 결정에 앞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정·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결과로서 행정관청을 기속하지는 못하는 위원회이

다.

- ③ 의결위원회: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무에 대한 의결적 기능을 수행하며, 그 결과로서 행정관청을 기속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위의 구분에서 설명한 '자문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의 유형 구분이 실제로는 동일한 정부 문서에서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위원회의 유형을 위와 같이 구분하고 있는 동일한 정부부처 발간 자료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와 '심의·조정위원회'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의·조정위원회'를 '자문위원회'에 포함시켜 하나의 범주로 묶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총무처에서 발간한 위원회 편람(1992, 27)에서는 정부산하의 행정관청이 아닌 총 358개 위원회를 의결위원회 76개, 자문위원회 282개 등 2개의 범주로 나누고 있으며, 정부위원회 현황(1994, 3)에서는 총 421개 위원회를 의결위원회 60개, 심의·조정위원회 205개, 자문위원회 156개 등 3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정비추진 보도자료(2001, 3)는 '의결위원회', '심의·조정위원회' '자문위원회'를 함께 묶어 자문위원회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불명확성 때문에, 일찍이 행정개혁위원회(1989, 257)에서는 정부산하 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자문'과 '의결'로 이원화하고 각각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일 것을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행정의 현장에서는 이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떻든 우리나라의 정부산하 위원회 중 행정관청이 아닌 위원회의 대부분은 그 의사결정이 행정관청을 기속하지 못하는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의 위원회이며, 극히 소수의 위원회만이 의사결정 결과가 행정관청을 기속하는 의결기능의 위원회라 할 수 있다.

2. 2 위원회의 운영 행태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는 단독제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능률·행정책임·행정기밀 등은 단독의 개인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경우 확보할 수 있으므로 행정사무의 처리에 있어서는 단독제가 적합하지만, 위원회는 ① 행정의 중립성과 정책의 계속성 확보 ② 관료주의의 지양 ③ 조정의 촉진 ④ 집약적 결정 ⑤ 협조적인 인간관계 ⑥ 과업수행의 열의 ⑦ 위원회 참석을 통한 관리자 양성 등의 장점(김규정 1988, 375-376)이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살리고자 설치된 우리나라의 많은 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창호(1999, 484)는 우리나라의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남설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의 권한·책임·지위가 불명확하며, 실질적인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가 드물며, 위원회의 운영이 민주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동원이나 책임전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정부산하 위원회 운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길종백(1997,

86-88)은 우리나라의 위원회들이 대체로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정책에 대해 실질적인 의견제시가 어려우며,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상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해 정부당국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형식적이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주기적으로 통폐합 하여 왔다. 실제로 1981년도 위원회 수는 70개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총 436개였으며, 1991년도에는 51개를 정비하여 총 383개, 2000년도에는 15개를 정비하여 총 354개로 나타나고 있는데(총무처 1994, 8: 행정자치부 2001, 2), 정부의 주기적인 위원회 정비에도 불구하고 많은 위원회가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실정임을 짐작할 만 하다.

이러한 당국의 방침에 따라 정부산하 도서관정책위원회였던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도 '도 유명무실한 운영이라는 판정을 받아 1998년에 정비방침이 정해지고', 2000년 1월에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관련 조항의 삭제로 완전히 폐지되었던 것이다.

3.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분석

3. 1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역할

도서관 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 효율적이며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 확

1) 다음 기사에 의하면 이 위원회의 폐지 방침은 이미 1998년 11월에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일보. 1998. 11. 4 정부위원회 145개 없앤다전체의 39%.

고한 틀을 마련하여, 모든 정책적 이슈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적 도서관 정책순환 모형은 다음의 3개 과정이 기능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이용남 1996, 9-10).

- ① 정책순환의 제1의 과정: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를 수많은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 조정하며, 그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자문·건의하는 ‘도서관 정책위원회’의 역할이다.
- ② 정책순환의 제2의 과정: 위의 과정에서 연구·개발·제안된 정책을 각종 법률이나 규정, 조례, 지침, 기준 등으로 구체화하고 공식화 시키는 과정이다.
- ③ 정책순환의 제3의 과정: 중앙 및 지방정부의 도서관행정 전담부서에서 도서관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이다.

정책순환 제3과정의 행정집행 결과는 피드백 되어 다시 성과 분석·평가를 통해 새로운 정책의 연구·개발과 조정이라는 제1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으로 엮여져야 한다. 이렇게 볼 때 도서관정책 순환모형을 제대로 가동시키는 엔진역할을 하는 기구는 첫 번째 과정인 ‘도서관정책위원회’이다.

이러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김용원(2003, 107-110)은 ① 도서관·정보정책의 자문과 답변 ② 국민의 요구·이익의 집약적 조정 ③ 정책평가 기능 ④ 조사·연구 기능 ⑤ 교육·계몽 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1970년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관으로 설치된 미국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는 도서관·정보정책을 조사·연구·개발하

여 이를 대통령과 의회 그리고 정부 각 부처에 보고·건의·자문하며, 그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국가차원의 도서관·정보 활용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CLIS 2003).

또한,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LIC와 Resource)는 각급 정부기관에 대해서 도서관 관련 사항에 관해 권고·자문하고, 다양한 도서관·정보 시스템을 조정하며, 긴급 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촉구와 적절한 대응책 제시, 그리고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연구전략을 수립·개발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IC 2003: Resource 2003).

이렇게 볼 때, 도서관정책 위원회의 주요한 역할은 한마디로 도서관·정보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러 관련 정부부처와 이를 조정하며, 정책 집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기관에 자문하고 건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3. 2 도서관정책위원회의 창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과거 오랫동안 도서관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다가, 1987년 11월에 개정·공포된 도서관법과 198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신설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서관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9조).

도서관법시행령에 의하면,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은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문교부차관,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문교부·체신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 있는 업무 담당자 각 1인과 한국도서관협회의 장으로 하고, 임명직은 도서관학(문헌정보학) 교수나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였다(제7조).

그리고 위원회는 ①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③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문교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직무를 명시하였다(제9조).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제10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임명토록 규정토록(제11조)하는 등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하여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1989년 9월 7일 ‘도서관발전위원회’란 명칭으로 처음 출발하였으나²⁾ 도서관 정책이 문교부 소관 시절이던 2년 동안에는 본회의 2차례, 분과회의 3차례 열리고, 문화부에서 문화관광부까지 정책소관 시절 12년 동안에 본회의 6차례, 분과회의 2차례 개최하여 활동하였는데, 이들 위원회의 변천과 활동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3. 3 문교부 소관 시대의 활동

3. 3. 1 제1차 도서관발전위원회

새로운 도서관법이 1987년에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988년에 개정되어, 법적 토대를 마련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은 모법이 공포된 후 2년, 시행령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구체화되지 못하다가, 1989년 9월 7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발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문교부당국에서는 “도서관법 등 관계 법령 정비 후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도서관 행정의 문화부 이관 문제가 거론되어 보류 중에 있었으며, 89년 7월 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도서관 행정의 문교부 존속 결론에 따라 회의 개최 추진이 본격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문교부 1989), 여러 정황으로 보아 이는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부서 이관 문제가 위원회의 발족을 촉진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을 비롯하여 도

2) ‘도서관법’이 ‘도서관진흥법’으로, 다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변경되면서 도서관발전위원회 관련 조항이 부분 수정됨에 따라, 도서관정책 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도서관발전위원회’에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서관계를 위시한 각계인사를 위촉하여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는 22명의 위원이 참석하였다.

위원회 제1차 회의는 교육부에서 초안 작성하여 제안한 각 안전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9: 문교부 1990).

1) 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세칙 심의

총 10개 조문으로 된 위원회 운영세칙을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의 자귀를 수정하여 의결한 세칙내용은,

-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도록 하며(2조),
- ② 임시회의는 문교부장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도록 하며(2조),
- ③ 위원회에는 도서관발전정책 분과위원회, 도서관정보협력망 분과위원회, 도서관진흥기금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영역에 속한 의안의 심의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며(3조, 4조),
- ④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각 분과위원회는 비상근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5조),

⑤ 위원회는 안전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6조) 내용 등이었다(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1-10).

2)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 전체 위원 중에서 3개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배정하고, 분과위원회장을 선출한 결과, 도서관정책 분과위원회장은 이춘희, 도서관정보협력망 분과위원회장은 박계홍, 도서관진흥기금 분과위원장은 정필모 위원이 선출되었다.

3) 도서관발전 기본방안

당시 교육부가 성안하여 제시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서관 발전 기본방안은 비교적 의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서관 정책 및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도서관정보과, 시·도교육위원회에 도서관정보계를 신설하도록 하며, 도서관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도서관진흥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기반 확립, 관종별 도서관의 자료 확충과 기능 활성화 계획 등의 내용이었다(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13-34).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①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국’ 단위로 신설, ② 공공도서

3) 정책소관 부서 이관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8년부터였는데, 한국도서관학회('89. 5.22일), 전국대학도서관학과장협의회('89, 6.22일), 한국도서관협회('89.7.7일) 등의 소관부서 이관 건의로 피크를 이루게 된다. 도서관정책의 중요 과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시점에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자문기구로부터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무부서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러한 기구의 힘을 빌릴 수도 있었을 터이니 만큼, 정책부서 이관 문제 거론 때문에 발족이 늦었다는 설명은 이해가 어렵다. 근원적으로 처음에는 이 기구의 가치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등한시 하다가, 오히려 정책부서 이관문제가 본격화 되자 서둘러 발족시켰다는 관점이 타당하리라는 분석이다.

관의 면단위까지의 확충, ③ 학교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문교부, 교육위원회, 교육청 단위에 학교도서관 전담자(사서직 또는 장학직) 배치, ④ 사서직 직급 상향조정(국가직 2급까지, 지방직 3급까지)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들 제안 중 ③ ④항은 계획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서관정책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문교부 1990, 4).

4)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중앙도서관-지역대표관 - 지방대표관을 연결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협력망 운영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단계별로 사업추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심의하였다(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35-44).

이날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국가문헌정보체제 구축차원에서 체계적인 연구추진을 제안하여, 도서관정보협력망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후 추후 전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다.

5) 도서관 진흥기금 조성계획

문교부에서는 도서관진흥기금의 조성은 정부출연금, 법인·단체·개인의 기부금을 기본으로 하고, 도서 생산자로부터 판매가격의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45-48), 위원들은 기금조성이 도서관 이용자나 도서 생산자 부담보다는 정부출연금과 기업·단체의 기부금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도서관진흥 기금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후, 전체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90, 5).

3. 3. 2 제2차 도서관발전위원회

교육부에서 도서관정책을 관장하던 시대의 제2차 도서관발전위원회는 1990년 1월 22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결과와 분과위원회에 부의하였던 회의결과를 보고하고, 그 내용을 수합한 안건을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3개 분과위원회의 토의 결과와 전체회의 부의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90).

1) 분과위원회 토의 결과 보고

① 도서관발전정책 분과위원회

1989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도서관 발전방안의 기본체제만 토의하고 앞으로 전문 연구위원을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② 도서관정보협력망 분과위원회

1989년 10월 12일에 개최된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협력망체제의 구성은 법의 기본체제를 따르고, 도서관정보협력망과 도서관전산망을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단계별 사업추진 10개년 계획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산화계획에 맞추어 7개년 계획으로 단축하도록 하며, 기초연구를 위한 전문 연구위원은 5명 정도로 하고 연구위원 선정은 분과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③ 도서관진흥기금 분과위원회

1989년 10월 19일에 개최된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기금확보에 있어 90년부터 94년까지는 정부출연금만으로 충당하고 도서 판매가의 일정비율 기부 등의 여러 방안은 95년 이후부터

추진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재원의 기반을 위해 도서관세 징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 도서관발전 기본방안

도서관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부의하였던 도서관발전 기본 방안 중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의를 거친 내용을 보완하여 전체 위원회에 부의하였다. 분과위원회 제안 사항 중에서도 문교부 당국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마련한 방안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서관발전 기반체제의 확립: 도서관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국민독서진흥법의 제정 검토, 도서관 전담부서의 확대, 도서관 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축, 도서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 등.
- ② 도서관 시설·자료 확충 및 기능 활성화: 국립중앙도서관 및 관종별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
- ③ 국민독서 활성화운동 전개: 국민 독서운동 기반구축, 독서풍토 조성 등

3. 4 문화부·문화체육부 소관 시대의 활동

1991년에 도서관정책 소관부처가 문교부로부터 문화부로 바뀔으로써 도서관발전위원회

는 문화부장관의 자문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되었다. 1992년부터 2000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개정으로 폐지될 때까지 도서관발전위원회의 변천과 활동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4. 1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정책 주무부서가 된 문화부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992년 7월 24일에 처음으로 도서관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도서관진흥법 제9조에 의거 위원장은 문화부 차관,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으로 하여, 당연직 10명, 위촉직 18명 등 총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분과위원회는 문교부 시절의 3개 분과위원회 명칭을 수정하여 도서관발전기본정책 분과위원회(11명), 도서관재정분과위원회(9명), 도서관협력망 분과위원회(8명)로 하였다. 30명의 위원 중 28명이 참석하고 문화부차관이 주재하여 이날 토의·심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부 1992a: 문화부 1992b).⁴⁾

① 위원회 현황 및 운영계획 보고

도서관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내용과, 위원회는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수시로 열며, 문화부 도서관정책과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을 보고하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위원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회의에는 문화부 이관 후의 도서관발전위원회 운영세칙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4) 도서관정책 문화부 이관 이후 최초의 도서관발전위원회는 당초 실무차원에서 1차 회의는 91년 3-4월 경, 2차 회의는 91년 9-10월 경 개최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고 1년 이상 지연되다가 92년 7월에 처음으로 열리게 된다(문화부 1991).

도의과정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을 뒷받침할 세칙제정을 건의하였다.

② 도서관발전 정책 기본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을 계기로 하여 도서관 행정체계의 정비, 도서관시설의 확충, 자료 확충 및 운영 현대화, 도서관협력망 구축, 사서직 중심의 도서관 운영확대, 도서관 진흥기금 조성, 고전읽기운동 추진 등 과거부터 내려오던 도서관계 현안에 대한 문화부 입장의 원론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함께 자료 확충과 사서직 정원확보의 중요성, 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이 건의내용이 제안되었다.

3. 4. 2 제1차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1994년 3월에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도서관발전위원회'도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란 이름으로 바뀌어 1994년 12월 13일에 개최되었다. 총 28인(당연직13인, 위촉직 15인)으로 위원을 새로 구성한 후, 부위원장(국립중앙도서관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기본정책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95년도 중점 추진계획을 심의하였다. 보고내용 중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91년부터 매년 50억-100억원의 국고예산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정과 행정체계 개

선에 관한 용역연구 결과 공공도서관행정 일원화의 필요성이 논증되어 1994년 3월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검토하였으나 결론이 유보되었다는 내용 등이었다(문화체육부 1994a).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안된 주요 정책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부 1994b).

-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규칙을 제정하고⁵⁾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것.
- ②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이원화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개선 노력 집중, 공공도서관 이외의 학교·대학교도서관 등에 대한 법적 뒷받침 조치 등 도서관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
- ③ 민간이나 법인의 기부에 의해 15개 시·도에 전문도서관(과학, 법률, 경제도서관 등)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
- ⑤ 도서관진흥기금을 위한 정부출연금 노력 지속 등, 무려 20개 항에 달하는 다양한 정책건의 사항을 제안하였던 것이다.

3. 4. 3 제2차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1995년 12월 13일 개최된 두 번째의 도서관 및독서진흥위원회 모임에는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95 추진실적 및 '96 중점추진 계획,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 분과위원회구성 및 분과

5) 문교부 시절의 도서관발전위원회에는 운영세칙이 있었으나, 문화부로 이관된 후에는 이 세칙이 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92년도의 도서관발전위원회에서 세칙 제정이 건의된 후, 실무차원에서 안(案)을 만들어 검토하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 후 94년도 회의에서 자문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시각을 비판하며 재차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1995년에 운영세칙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위원장 선출 문제를 심의 하였다. 이날 논의 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체육부 1995b).

- ①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를 위해, 행정쇄신위원회의 '96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연구·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기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부, 내무부, 총무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는 문화체육부 계획 심의.
- ② 새로이 제정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운영세칙에 의거 도서관발전정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두영), 도서관협력망분과위원회(위원장: 현규섭), 독서진흥분과위원회(위원장: 김수남)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
- ③ 기타 '96 중점추진 계획에 대한 부분적인 의견개진이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도 위원들로부터 ① 국립중앙도서관을 사서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 ② 2001년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유치, ③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사용문제 검토, ④ 공공도서관 사서직 임용시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조 문제, ⑤ 도서관 발전모델 연구 사업에 분과위원회 참여 등 다양한 건의 내용이 제안되었다(문화체육부 1995c).

3. 4. 4 제3차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법률에 의거한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개최된 것은 1996년 12월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96추진실적 보고와 '97 중점

계획을 심의하며, 주요현안 사항을 논의하였다(문화체육부 1996).

당해연도 추진실적과 신년도 추진계획은 공공도서관건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내역과 자료구입비 지원, 독서인구 저변확대 활동, 국립중앙도서관의 주요사업 등 일상적인 업무내용이었다. 현안사항 논의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법률에 의거 97년 1월1일부터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을 임명하여야만 하는 문제였는데, 문화체육부에서는 교육부,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서직 임용을 촉구하며, 행정직 공공도서관장에게 한시적으로 사서 자격 교육을 실시한 후,⁶⁾ 전직 임용하는 방침을 논의 하였으며, 나머지 사안은 매년 반복되는 안건에 대한 단편적인 제안이었다.

1996년 회의 이후 주무당국은 이 위원회를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방치하여 두다가, 드디어는 각급 정부기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으로써, 이 위원회는 2000년 1월에 폐지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3. 4. 5 분과위원회 활동

문화체육부 시절의 분과위원회는 단 두 차례뿐이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발전기본정책 분과위원회

1993년 9월17일 도서관발전기본정책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출판계의 주도로 제정코자 하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던 독서진흥법 문제가 주로 논의 되었다.

6)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6년 8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64명의 공공도서관 관장에게 사서자격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이 회의에서 위원들은 독서진흥법의 취지는 이해하나, 법체계의 결함과 졸속성, 그리고 도서관진흥법과의 중복·상충 염려 등을 지적하였다.

2) 도서관협력망 분과위원회

1996년 8월 8일 개최된 이 분과위원회에서는 도서관협력망을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체제로 구성하되, 1단계는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며, 2단계는 대학, 전문·특수·학교도서관을 포괄하여 구성하는 방침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3. 5 문화관광부 소관 시대의 활동

1989년에 처음으로 발족하여 12년간 유지되어 오던 도서관정책 자문기구의 활동과 실적이 저조하고 유명무실하니 보다 강력한 기능수행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도서관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0년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되자 이에 대한 도서관계의 안타까움은 적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국도서관협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문화정책개발원의 두 차례에 걸친 연구보고서(한국 문화정책개발원 2001, 162-163; 2002, 188-189)의 제언에 힘입어 다시 정책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리하여 2002년 10월 31일자로 문화관광부 훈령(제87호)에 의거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국가도서관정

책자문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비록 법률적 뒷받침이 없이 주무부처의 훈령⁷⁾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여러 한계가 있기는 하였으나, 공식적인 자문기구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 위원회의 체제와 주요 활동을 살펴본다.

3. 5. 1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의 체제

이 위원회는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해 제정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기구인 바, 전체 7개 조항으로 구성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2).

①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

- 도서관 발전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지원정책에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를 위해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 구성과 임기

- 도서관 및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주요 국가도서관장 등 2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7)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행정명령으로, 하급관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일반 사인(私人)에 대하여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행정관청 가운데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이종수 2000, 386).

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회의

-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④ 간사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장이 된다.

위의 규정에 의거 도서관 관련인사, 출판계, 언론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22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과거 도서관법이나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하였던 위원회와 이번 위원회의 구성에서 크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위원회는 도서관정책에 관련된 다른 중앙 정부부처의 관계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주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민간위원과 함께 구성되어 있던 것에 비해, 이번의 위원회는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고 도서관 관련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한 위원회의 한계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 위원회는 주무부 차관이 법률에 의거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에서 호선절차를 취했다는 점이다.

3. 5. 2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이렇게 하여 구성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

원회는 그간 3차례 개최되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02년도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002년 12월 13일에 개최된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이용남)을 선출하고, 정부에서 성안하여 발표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03-2011)’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화정책개발원의 용역연구를 거쳐 이미 2002년 8월에 정부안으로 확정·발표된 계획인 관계로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일부 세부사항에 대한 보완적인 의견 제안이 중심을 이루었다(문화관광부 2002).

2) 2003년도 제1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003년 4월 4일에 개최된 회의에서는 보고 과제로서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1차년도 추진 계획 검토시안,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검토시안, 국가전자도서관 활성화 방안 시안이 보고되었으며, 2003년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계획안이 토론과제로 제안되어 논의되었다.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문제는 이미 2002년 하반기부터 주무부처와 관련 협회가 중심이 되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문화관광부 2003a).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운영을 뒷받침할 확고한 법률적 토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건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었는데, 대부분의 제안은 분과위원회나 연구팀에서 심층적인

검토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단편적인 내용이거나 위원 소속기관의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위원장직을 맡았던 필자의 판단이다.

3) 2003년도 제2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2003년 11월 14일에 개최된 제2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회의는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3년도 추진실적 보고와 문화관광부 도서관박물관과의 기능 전환문제,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의 토의내용은 다음과 같다(문화관광부 2003b).

①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2003년도 추진실적 도서관인프라 확충, 도서관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개정 추진 과정 등이 보고 되었다. 법 개정문제는 당초에는 금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개정절차를 밟을 계획이었으나, 이 법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법제연구원의 권고에 따라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책과제로 연구가 진행 중인데, 12월 말까지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2004년도에 후속 개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보고였다.

② 도서관박물관과의 기능 전환

현 정부의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집행기능은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중앙부처는 보다 큰 틀의 정책기능을 담당한다는 취지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도서관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공공도서관의 설립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도서관 및 문고에 대한 지원 사항, 독서진흥 활동 지원·육성 사항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위임토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방침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수면 위로 부상하여, 그동안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전체 도서관계는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오고 있는 현안사항으로서, 이번 회의의 핵심 관심사였다.

위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계획을 비난하며, 재고를 요청하였다. '90년대 초 도서관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될 때의 결정적인 약속이 바로 전담과 설치와 공공도서관장의 사서직 보임이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문화관광부가 도서관정책을 소속기관에 위임하려면 아예 도서관정책을 포기하고 다른 정부부처에 다시 이관하라는 등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에 주무당국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의 위임사무는 일상적인 집행기능 뿐이며, 정책형성 기능은 중앙부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도서관진흥 정책은 담당부서의 새로운 명칭인 문화정책과(문화정책실 소속)의 주요 기능으로 계속 존재할 것임을 확인하며,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관련 정부부처와의 업무조정을 위한 가칭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신설을 법제화할 구상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정책기능 약화를 염려하는 도서관계와 대다수 위원들의 뜻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3. 6 종합 분석 및 문제점

3. 6. 1 문교부 시절의 위원회

① 도서관계의 강력한 요구로 도서관발전위원회가 법제화되고서 1-2년 지난 후, 도서관정책의 문화부 이관문제가 본격화 되자 이 기구를 발족시킨 배경을 추측한다면, 당초에는 문교부 당국에서 이 위원회의 시급성이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동적이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② 그런데, 당시 문교부의 계획안에 대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추가적인 건의를 주무부처가 수용하여 확정시킨 '도서관발전 기본방안'은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발전계획 중에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정책제안에 대한 정부당국의 수용 의지와 노력이 외관상으로는 매우 컸다고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도서관행정 전담부서를 위해 문교부에 도서관정보과(과장 4급사서관), 교육위원회에 도서관정보계(계장 5급사서관) 신설,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직급의 상향조정과 전문직 부관장제 실시, 공공도서관 지도·감독체계의 문교부로 일원화, 2001년까지 인구10만명당 공공도서관 설치확대, 사서직급을 국가직은 2급, 지방직은 3급까지 2단계 상향조정한다는 등의 의욕적인 계획이 공식화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청사진은 도서관 정책 소관부처 문제로 인해 문교부와 문화부가 줄다리기를 하던 시점이란

점을 감안하여 그 배경을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발족 이후의 위원회 운영방법이나 운영과정을 보면, 분과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나 위원회 제안사항을 가급적 수용하려는 자세 등은 문화부 이관 이후보다 오히려 바람직스러웠다고 인정할 만하다.

3. 6. 2 문화부 이관 이후의 위원회

① 1991년에 문화부로 도서관 정책이 이관된 후에도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무당국의 기대나 인식은 저조했다는 생각이다. 이관 이후 첫 번째인 '92년도 회의에서는 물론 '94년도 회의에서도 재차 강력한 요구가 있고서야 '95년에 운영세칙이 마련된 사실을 보거나, 운영세칙에 규정된 위원회 개최 회수(1년에 정기회의: 2회, 임시회의: 수시)를 한번도 못 채우고 1-2년에 겨우 한번씩 열리다가 '96년 이후에는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방치하여 둔 결과, 급기야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의 폐지라는 빌미를 제공한 당국의 자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이토록 방치된 데에는 도서관계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기회의 연2회를 규정한 위원회의 운영세칙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노력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로⁸⁾ 개최하려는 노력 등이 별로 보이지 않음은, 도서관계 역시 이 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리라는 체념이 컸었다는 분

8) 회의 소집은 위원장(주무부처관)의 권한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규정은 교육부 시절의 운영세칙(제2조3항)은 물론 문화체육부 시절의 운영세칙(제5조4항)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석이 가능하다.

③ 위원회 회의에서는 다듬어지지 않은 단편적인 제안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는 30명 가까운 위원들이 한꺼번에 실질적인 토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의 심층적인 연구를 통한 대안제시 방법을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흥적이며 산발적인 제안이나 건의를 체계화시키고 종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고는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④ 위원들의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만 끝나고,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나 추진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⑤ 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주무부처는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항의 세부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이나 여론수렴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위원들은 큰 정책적 현안과제나 다른 정부부처와 조율이 필요한 사항 등에 비중을 두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⑥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된 후에 설치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는, 비록 문화관광부 훈령에 의해서라도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당국의 인식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긍정적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도서관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관련부처와의 정책 조율 기능이 불가능하고, 분과위원회나 연구위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은 시정이 시급하다.

4.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4.1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책위원회 분석의 시사점

이 연구의 전 단계 연구로서 수행한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분석결과(이용남 2003) 중,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얻을만한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1.1 미국의 경우

① 세계의 여러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는 전체 도서관을 관장하는 연방정부 부처(部: Department)는 없는 셈인데, 그 대신 연방정부의 도서관 지원금을 배분하며 도서관 육성 업무를 집행하는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와, 국가의 도서관 정책 업무를 연구·개발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건의하는 자문기구인 NCLIS(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두 기관이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특수한 구조이다(Dowling 2001, 134).

② 1970년에 설치된 미국의 '국가문헌정보학위원회'(NCLIS)는 최고 행정수반인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되는 독립적인 상설기관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위원회는 별도의 법률(Public Law 91-345 : 약칭 NCLIS법)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예산·직원·물품조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정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설 사무국을 두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그 기능을 수

행하고 있다.

③ 이 위원회는 매우 광범위한 기능을 법률로부터 위임받고 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는 물론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자문, 도서관·정보 요구와 관련된 서베이와 연구 수행, 전국적인 도서관·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지난 회계년도 동안 위원회의 정책 연구·개발, 자문, 건의 등 주요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며 공표한다.

④ 이 위원회는 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별정책 제안에 따라서는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하고(Sprehe 2001), 2002년 초부터 2003년 초까지는 해체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비교적 도서관 안팎과 정치권의 지지를 얻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는 점(Drake 2003, 36)은 주목할 만 하다.

4. 1. 2 영국의 경우

① 1995년에 발족된 '도서관·정보위원회'(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LIC)와 이 기구를 통합·개편하여 2000년에 발족한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일명 Resource)는 다같이 정부의 '문화·매체·체육부' 산하에 설치된 비정부 부처 공공기구(Non-Departmental Public Body)이다.

② 이들 위원회는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아래 상설 사무국을 두

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박물관·기록보존소·도서관위원회'(Resource)는 3개 부문을 함께 관장하고 있는 거대한 위원회 조직과 사무국으로서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LIC는 도서관·정보서비스 정책에 관해 정부기관에 자문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및 국제 활동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Resource 또한 각 부문 별 정책수행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을 개발하고, 해당 부문의 입장을 번론하며, 관련 정책을 정부기관에 자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자문기능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정책 연구·개발, 자문, 건의 등의 활동결과는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 주무장관에게 제출하며 공표한다.

④ 이들 위원회는 전문직 회원 단체인 도서관협회(The Library Association과 그 후의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와의 역할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⑤ LIC는 1998년 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의 정책제안서를 계기로 1999년에 영국국가도서관 연구개발부(BLRIC)의 기능을 LIC로 이관받고, 2000년에는 새로운 Resource를 발족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국가 대표도서관에서 갖고 있던 정책연구 기능을 자문위원회로 일원화 하였을 뿐 아니라, 도서관·박물관·기록보존소 등 3대 인류 문화유산 관리 및 서비스기관을 위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커다란 변

화로 간주할 수 있으나 그 성과는 좀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2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4. 2. 1 도서관정책위원회의 법제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도서관정책위원회는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198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시행령에 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을 명시하여 법률적 기틀을 갖추고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한 존재로 방치되다가 급기야는 폐지된 후, 문화관광부의 훈령에 의거한 취약한 바탕의 기구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이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일이라 판단한다.

첫째는, 현재와 같이 위원회 설치 근거가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훈령이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행정명령으로서 하급관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독립된 행정관청은 이에 구속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이종수 2000, 386), 도서관에 관련된 중앙행정부처와의 정책 조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장 강력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NCLIS 등은 도서관 관련법이 아닌 별도의 NCLIS법에 의해 설치·운영됨으로 인해, 그나마 안팎의 도전에 대응하며 그 소임을 다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우도 별도의 법까지는 아니더라도 2004년에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는 과거보다 강력한 기능의 위원회 설치를 반영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4. 2. 2 위원회의 위상 강화

현재 도서관 정책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대표도서관 이외의 공공, 대학, 학교도서관 등 대부분 관중의 도서관은 다른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책 조율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정책의 문화부 이관과 도서관진흥법 개정의 전제조건이 되었던, 교육기관 도서관(학교 및 대학도서관) 진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은 제정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는 동등한 중앙 행정부처 간의 행정적 협조만으로 정책현안을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NCLIS가 1980년대 초반의 경우에 도서관 주무부처인 교육부 이외에도, 의회에 대해서는 '도서관서비스및건축법'(Library Services and Construction Act)의 개정에 관해, 국무부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의 종합정보 프로그램에 관해, 국방부에 대해서는 문자변환 기술에 관해, 상무부에 대해서는 기상정보에 관해, 농무부에 대해서는 농민의 정보욕구에 관해 건의하는 등 관련된 여러 다른 연방정부기관에 자문한 바 있으며, 영국의 경우도 LIC 출범 직 후 2년(1995/97) 동안에만 주무부처를 비롯한 각급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에 무려 30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고 60회 이상의 모임을 가지면서 자문기능

을 수행하는 등 정책수립에 기여한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이용남 2003).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다른 중앙행정부처에 대한 도서관 관련 행정에 대한 자문과 조율이 문화관광부장관 산하의 자문위원회로서는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분석한 10여년 과정으로 실증되었으니 만큼, 위원회의 위상 강화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2, 188)의 도서관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에서도 “문화관광부가 주관부처가 되어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도서관정책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만약 범정부 차원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방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로라도 설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판단이다.

4. 2. 3 위원회의 기능 강화

1) 자문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위원회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과제는 위원회를 단순한 ‘자문’ 기능에서 ‘심의·조정’ 기능으로 격상시키는 일이다. 정부에서는 자문위원회란 지속력 없는 의사결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단순한 의견 제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이며, 심의·조정위원회는 정책의 최종 결정에 앞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조정·심의하여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그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는 있으나 그 결과로서 행정관청을 기속하지는 못하는 위원회임을 공식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구분이 모호한 바, 과거 행정개혁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기능을 ‘자문’ 기능에 포함시키고, 크게 ‘의결’과 ‘자문’으로만 2원화함으로써 각각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건의한바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2.1항 참조).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학계의 의견은 다르다. 정홍익과 김호섭은 우리나라의 위원회제도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구분하여 필요한 위원회부터 심의 기능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1991, 457).

“우리의 경우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지위나 권한의 명확화가 아니라 위원회의 법적 권한 혹은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일로 보여진다. 위원회의 정책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는 위원회의 역할이 불명확해서라기 보다는 위원회의 기능이 주로 ‘자문’ 기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가운데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정책 또는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자문’과 ‘의결’로 이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위원회를 본래 법적 취지대로 3원화하여 각종 자문위원회를 중요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심의·조정기구로 전환하고 어느 정도의 법적 권한이나 구속력을 부여토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위원회(1989-1993),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1994-2000), 그리고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2002-2003)의 법규적인 성격이 '자문' 기능의 위원회인가 혹은 '심의' 기능의 위원회인가의 문제는 역시 명확하지 않다. 최초의 도서관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한 도서관법(1987.11)에서는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 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를 둔다"(제9조)라고 하였으나, 동시행령에서는 "위원회는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제9조)라는 표현으로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그 후에 개정된 도서관진흥법(1991.3)에서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판단하기가 모호하다. 그런데 도서관및독서진흥법(1994.3)에서는 "… 다음의 중요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에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를 둔다"(제10조)라고 규정하여 심의위원회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되는 문화관광부 훈령(1991.10)에서는 "위원회는 … 문화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정책을 건의한다"(제2조)라고 규정하여 다시 자문기능을 명시하고 있는 바, 지금까지 위원회의 법규적인 성격은 '자문' 기능과 '심의' 기능을 오락가락 하는 모호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비록 우리나라 행정부에 설치된 대부분의 위원회가 심의와 자문기능이 잘 구별되지도 않고 실제로 기능상 별 차이가 없었던 실정이었다 하더라도,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조정위원회'의 범주로 명확히 하고, 심의·조정 성격에 걸맞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기능과 역할의 다양화

위원회 역할에 대해 지금까지의 법규 규정에서 명시된 표현은, 어떠한 사항에 대해 ① 심의하며, ② 주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며, ③ 관련 정책을 건의한다는 표현뿐이었다. 그러나 심의, 자문, 건의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정책연구 기능이 필수적이며, 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그 자리에서 배부된 유인물을 훑어보면서, 체계적이지도 않는 즉흥적이며 우발적인 의견을 내어놓는 상태로는 제 구실을 할 수 없다. 정책 제안과 건의는 어떤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산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관련 여러 정부부처의 행정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과 위원회에서 제안·건의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정책추진 결과를 분석·평가하는 피드백 역할이 추가 또는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기능에는 심의·자문·건의 등의 기능에 덧붙여, '정책연구' 기능과 정부부처 간의 '정책조정' 기능, 그리고 정책추진 결과의 '분석·평가' 기능이 추가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4. 2. 4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치

1) 분과위원회와 연구위원 활용 강화

지금까지의 위원회 운영은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런데 30명 가까운 위원들이 한꺼번에 모여 1-2시간 내에 여러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토의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편적이며 즉흥적인 발언이 중심을 이루고 토의 결과에 있어서도 기대수준에 못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분과위원회나 연구위원회, 태스크포스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일인데, 이 역시 선진국의 사례에서 입증된 방안이다. 그리고 이들 실무적인 소모임의 위원은 필요에 따라 구성되되, 위원회 정규위원이 아니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들 소모임을 통해 어떠한 사안에 대해 집중적이며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거나 건의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집행 결과의 피드백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정책제안이나 건의 사항이 회의석상의 발언으로만 끝나기 쉽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정책추진 및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의 사례를 본받아서, 주요 정책제안 내용은 물론 전반적인 정책추진 결과를 종합하고 활동을 분석·평가한 연간보고서를 위원회가 매년 일정시기까지 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3) 회의소집 및 회의 회수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의 경우는 '운영세칙'에 의거하여,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연 2

회 소집하도록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주무부차관)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훈령에 의거하여,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되, 회의소집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회의소집 권한과 절차가 경직되어 있었던 바, 전체회의 소집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급적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의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4) 위원회의 행정사무 지원

현재에는 주무부처의 도서관 행정 담당과장이 위원회의 간사가 되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면 이를 지원할 행정사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상설 사무국을 두고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의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위원회에서는 상설 사무국을 두고 있는 바, 앞으로의 도서관정책위원회도 상근 직원을 갖춘 사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 등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 판단이다.⁹⁾ 이상적인 최선의 방안이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국가 대표도서관의 특정 부서의 인원을 조정하고,

9) 행정자치부의 2003년도 정부 조직관리 지침(2003, 13-14)에서 "자문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상근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경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는 등 임의채용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명의 인원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위원회 사무기구 역할을 진담토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5. 결론 및 요약

도서관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여러 관련 정부부처와 이를 조정하며, 정책 집행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관련기관에 자문·건의하기 위한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전략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산하 위원회들의 개략적인 행태를 알아보고, 그간의 도서관정책위원회 변천과 활동을 분석한 후, 선진국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고려하여 우리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간의 도서관정책위원회 변천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발전위원회’가 처음 법제화된 초기에는 문교부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동적이었다고 판단되나, 발족 이후의 특별한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위원회 운영방법이나 과정에서는 문화부 이관 이후보다 오히려 바람직스러웠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② 1991년 도서관 정책의 문화부 이관 이후에도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주무당국의 기대나 인식이 저조했다는 분석은, 위원회의 개최 회수나 운영 내용 그리고 위원회가 폐지되

는 과정에서 입증되고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서는 즉흥적이며 단편적인 제안이 많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어려웠다. 이는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을 활용하여 산발적인 제안을 체계화시키고 종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④ 위원회 회의 결과에 있어서도, 정책제안이나 건의사항은 회의석상의 발언으로만 끝나고, 그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나 추진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⑤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가 폐지된 후에 설치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는 도서관 관련 여러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할 수 없어 관련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어렵고,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의 활용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도서관정책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의 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고 있는 문화관광부 훈령은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행정명령으로서 하급관청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있으나 독립된 행정관청은 이에 구속될 의무가 없으므로, 도서관에 관련된 중앙행정부처와의 정책 조율이라는 위원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도서관정책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의 과제는 이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갖추는

10) 만약 문화관광부 당국의 계획(문화관광부 2003b, 10-11)대로 도서관정책 중 미시적이며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이관된다면, 그 담당부서의 일정인원이 위원회 사무기구 역할을 담당토록하는 아이디어이다.

일이다.

② 뿐만 아니라, 도서관 정책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는 동등한 중앙 행정부처 간의 행정적 협조만으로 정책현안을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입증된 만큼, 도서관정책위원회를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정부방침에 따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무총리 산하의 위원회라도 설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정부산하 위원회의 대부분이 심의와 자문기능이 잘 구별되지 않고 실제로 기능상 별 차이가 없었던 실정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위원회의 성격을 '심의·조정위원회'의 범주로 명확히 하고, 그에 걸맞도록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④ 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조치로서는 지금까지 주로 수행되어 온 심의·자문·건의 등의 기능에 덧붙여, 정책연구기능과 정부부처 간의 정책 조정기능, 그리고 정책

추진 결과의 분석·평가 기능을 추가하고 이러한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⑤ 다음으로는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전체회의 중심의 운영을 지양하고 분과위원회와 연구팀 등의 심층적인 정책연구를 통해 통일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건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로는, 위원회의 제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당국의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피드백 시스템의 일환으로, 주요정책 제안내용 및 전반적인 정책 추진 결과와 활동을 종합분석·평가한 연간보고서를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여 당국에 제출하고 공표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로는, 경직되어 있는 회의소집 권한과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하고 분과위원회나 연구팀 등의 소모임 중심체제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로는,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면 이를 지원할 행정사무가 적지 않을 것인 바, 도서관정책위원회에도 상근 직원의 사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어렵다면, 국가대표도서관 인력활용 등 가능한 차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길중백. 1997. 『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김규정. 1988. 『행정학 원론』. 서울: 법문사.
 김용원. 2003. 『圖書館情報政策』. 東京: 丸善株式會社

도서관발전위원회. 1989. 『제1차 회의 심의사항』. [서울]: 동위원회.
 문교부. 1989. 『도서관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자료』. [서울]: 문교부.
 문교부. 1990. 『제2차 도서관발전위원회 회의 서류』. [서울]: 문교부.

- 문화관광부. 2002.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참고자료』.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2003a. 『2003년도 제1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서울]: 문화관광부.
- _____. 2003b.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문화관광부.
- 문화부. 1991. 『도서관발전위원회 개최계획』. [서울]: 문화부.
- _____. 1992a. 『회의자료: 도서관발전위원회』. [서울]: 문화부.
- _____. 1992b. 『도서관발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서울]: 문화부.
- 문화체육부. 1994a.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문화체육부.
- _____. 1994b.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서울]: 문화체육부.
- _____. 1995a.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운영세칙』. [서울]: 문화체육부.
- _____. 1995b.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문화체육부.
- _____. 1995c.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서울]: 문화체육부.
- _____. 1996. 『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 회의자료』. [서울]: 문화체육부.
- 이용남. 1996. 우리 도서관문화의 현주소: 제 34회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도서관 문화』, 37(6): 8-14.
- _____. 2003. 미국과 영국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비블리아』, 14(2).
- 이종수. 2000.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 정홍익, 김호섭. 1991. 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민참여의 활성화. 『한국행정학보』, 25(2): 437-464.
- 총무처. 1990. 『위원회편람』. [서울]: 총무처.
- _____. 1992. 『위원회편람』. [서울]: 총무처.
- _____. 1994. 『정부위원회 현황』. [서울]: 총무처.
- 최창호. 1999. 『새 행정학』. 서울: 삼영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문화기반시설 중 장기 확충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동개발원.
- _____. 2002. 『도서관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동개발원.
- 행정개혁위원회. 1989. 『행정개혁에 관한 건의』. [서울]: 동위원회.
- 행정자치부. 2001.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보도자료)』. [서울]: 행정자치부.
- _____. 2003. 『2003년도 정부 조직관리 지침』. [cited 2003.10.20]
<http://org.mogaha.go.kr:7003/jojik/>
- Dowling, Michael. 2001. Libraries, Librarians, and Library Associations in the United States in 2001: Making a Difference in the Knowledge Age. *IFLA Journal*, 27(3): 133-42.
- Drake, Miriam A. 2003.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Why Not? *Searcher*, 11(2): 32-37.
- LIC. 2003.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cited 2003.8.10]
<http://www.lic.gov.uk/>
- NCLIS. 2003. About National Commission on

-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
[cited 2003.7.20]
<http://www.nclis.gov/about/about.cfm>
- Resource. 2003. 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cited 2003.
8.20]
- <http://www.resource.gov.uk/>
- Sprehe, Timothy 2001. NCLIS's Wasted
Motions. [cited 2003.7.10]
<http://www.fcw.com/fcw/articles/2001/0326/pol-sprehe-03-26-01.asp>